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업부지 규모를 정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 중 지형적 특성에 의한 예외를 제도 취지에 맞게 골재채취 구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콘크리트 품질향상을 위해 원재료인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업무대행 기관 추가(영 제4조)

바다골재자원조사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양 지형 및 지질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해양환경공단을 업무대행 기관으로 추가

나. 골재채취 변경허가 대상 완화(안 제31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다. 골재 선별·파쇄시설에 대한 복구비 예치 예외규정 조정(안 제32조)

지형상 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 예외규정은 선별·파쇄시설과는 관련이 적으므로 적용 제외
라.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 부지규모 개선(안 제33조)

자연녹지지역 내에 골재 선별·파쇄시설 설치 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

마. 골재 품질기준 강화(안 별표 1의3)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골재에 대해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고,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제5조 중 “제4조제5호”를 “제4조제6호”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취허가량이 5퍼센트이상 증가하는 변경

제32조제2호 중 “경우”를 “경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구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골재선별·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이상)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자목 중 “품질시험을”을 “품질검사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1의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점토덩어리	1.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0.25% 이하
----------	---------	----------	---------	----------

별표 1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

관리항목	품질기준
가. 절대건조밀도	2.3 이상
나. 흡수율	4.0% 이하
다. 안정성	10% 이하

별표 1의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 ----- ----- -----.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u>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u> <u>“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u>제4조제5호</u> 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 ---- ----- ----- <u>제4조제6호</u> ----- ----- ----- ----- -----.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②----- -----

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2. (생략)

제32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1. 골재선별·파쇄업: 3천제곱

-----.

1. 채취허가량이 5퍼센트이상 증가하는 변경

2. (현행과 같음)

제32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제33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

-----.

1. 골재선별·파쇄업: 3천제곱

<u>미터 이상</u> 2. (생 략) ② · ③ (생 략)	<u>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1만제 곱미터 이상)</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46